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 장 전현진 주무관 최성규	042-481-5925
	2016년 12월 23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22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3배로 급증’

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최동규 청장)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6년 11월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하였고, '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이 '14년 11건, '15년 17건, '16년 4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최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특허권,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건들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고 있다.

일례로 패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A씨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양측은 형사고소 및 특허무효심판을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하여 소송과 심판을 모두 취하하고, 양측이 만족하는 보상금 지급 등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특허청은 '17년 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위원 확대, 1인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으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재권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adr.kipo.go.kr)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되고,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02-6006-4300)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신청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붙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참고자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분쟁조정 대상

-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

*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분쟁

-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 (현행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 (조정위원) 산업계, 학계, 관계, 법조계 등 15인 이상~40인 이하

* **발명진흥법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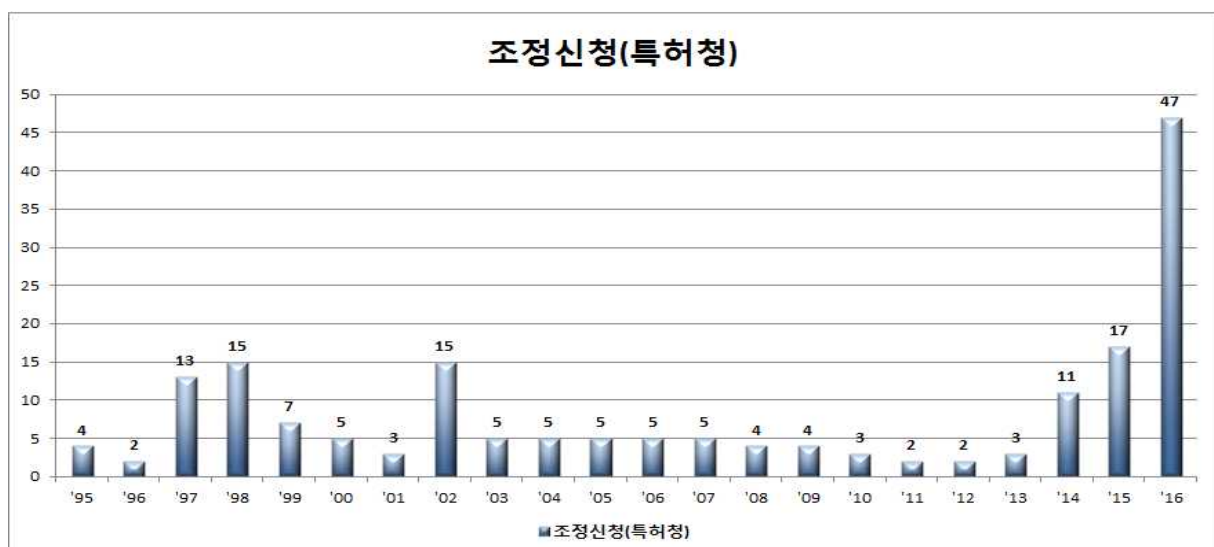
○ 분쟁조정 효력

-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 **발명진흥법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도별 조정 신청 건수



□ 조정절차

